

9.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施行令(案)

立法豫告 1990. 8. 4.

1. 宗旨목적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·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서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공업의 적정배치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공업입지정책심의회 의 기능과 조직
- 심의회는 공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, 국가공업단지의 지정,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승인, 공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기준, 개별입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작성, 개발입지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함.
 - 심의회는 위원장(경제기획원장관), 부위원장(건설부장관, 상공부장관)을 포

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 12개부처 장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함.

나. 공업입지 개발지침의 작성

- 공업입지 개발지침은 지역간 균형있는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·기간별로 공업단지의 유형별·제조업종별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.
- 건설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침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
- 지침의 내용에 인력수급, 지가 안정화,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.

다. 공업단지의 지정

-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와 공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 고시할 사항을 정함.
- 3이상의 기업이 지정신청한 공업단지

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그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하도록 함.

공업단지 지정권자는 시장·군수에게 공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송부하여 공고하게 하고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거쳐 공업단지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의견을 공단지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함.

라. 공업단지 지정의 효력과 지정해제
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, 건축물의 건축, 죽목의 재식 등 행위는 공업단지 지정목적과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장·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.

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국가공단은 5년, 지방공단은 3년, 농·공단지는 2년안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공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.

마. 기본계획의 수립

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개발기본방향, 구역의 범위, 토지이용계획, 유치업종, 주요시설계획 및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.

수립된 기본계획은 이를 고시한 후 시장·군수에게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을 하도록 함.

바. 사업시행자의 지정

- 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를 한국토지개발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중소기업진흥공단, 서울특별시 및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 함.
- 입주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기본계획상 민간개발을 하도록 정한 경우, 잔여지에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, 기존공장을 확장하는 경우 및 특히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함.

사. 합동개발의 시행

- 공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동개발시행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, 합동개발 참여자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함.

아. 실시계획의 승인

- 사업시행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(농공단지는 6월 이내)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함.
- 실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, 공업단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고시하도록 함.

자. 부담금의 부과·징수

-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순공사비, 조사비, 설계비 및 보상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.
- 시설부담금, 손피자부담금,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비용산출근거와 부담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.

차. 준공인가 및 사전사용허가

-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,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때는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함.
- 개발된 토지 등을 준공인가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함.

카. 개발토지 등의 인계·분양

- 사업시행자는 개발토지·시설 등을 관리기관에 인계할 때에는 인계·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할 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
-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계획서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(또는 승인)한 후 그에 따라 처분하도록 함.

-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분양·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업무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·조정을 한 후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도록 함.

타. 분양가격의 결정기준

-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수도권지역에서는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.
- 공장용지 이외의 지원시설용지나 주택용지 등은 감정가격으로, 학교용지나 이주택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각각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등 용도에 따라서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.
- 조성원가는 순공사비, 조사비, 설계비, 보상비 및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용역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.
- 적정이윤은 순공사비, 조사비, 설계비 및 보상비 합계액의 10/100 이내에서 해당 공업단지의 입주수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자가 정하도록 함.

파. 개별입지 지정 및 개발

- 개별입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장·군수가 그 기준에 따라 개별입지의 지정승인 및 개발을 하도록 함.

- 개별입지의 허용한도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된 용도지역 변경권한과 연계하여 10만㎡(약 3만평) 이하로 정하고자 함.

3. 의견제출

이 시행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

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입지계획과 전화 500-2854~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